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청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 시 소청인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피소청인에게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.

3. 주요내용

가. 인용 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 부여 및 결과 제출 규정 신설(안 제16조의2)

- 1) 위원회의 결정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소청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
- 2)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고,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결정에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 신설
- 3) 인용 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일정기한 내 조치의무 부여 및 결과 제출을 통해 소청인의 조속한 권익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

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조치 결과의 통보) ① 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피소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피소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소청인은 그 사유가 소멸되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2(조치 결과의 통보) ①</u> <u>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</u> <u>항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</u> <u>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</u> <u>피소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</u> <u>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</u> <u>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</u> <u>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피소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</u> <u>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조치하</u> <u>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</u> <u>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</u> <u>피소청인은 그 사유가 소멸되면</u> <u>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</u> <u>조치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</u> <u>제출하여야 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혁신처 행정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665